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에 포함 등〉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024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주요 검토사항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1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2. 25.
- (3) 회 부 일 : 2026. 2.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에게 의료·방역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보다 감염병 위기에 더욱 취약함.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 사망률(0.44%)보다 6배가량 높았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 또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9조의2제1항).

II.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방역 물품 지급 주체에 ‘질병 관리청장’을 포함하고,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9조의2제1항).

구분	현행	개정안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방역 물품 지급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 · 질병관리청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장애인 관련 감염취약계층 범위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 장애인

현행	개정안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 5. (생략) 5의2. <u>감염취약계층</u> 에 대한 유 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 복지시설의 유형별·전과상황 별 대응방안 6. (생략) ③·④ (생략)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u>제49조의2에 따른 감염취 약계층</u> ----- ----- -----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저소득층,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
하는 어린이, 노인-----

② · ③ (현행과 같음)

2. 주요 검토사항

가.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방역 물품 지급 주체에 ‘질병관리청장’ 포함

- 현행법 제49조의2제1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현행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20년과 2021년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필요한 물품을 총 4회에 걸쳐 감염취약계층에 지원한 바 있음.

※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 지급 내역: [참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 한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방역 물품 지급 주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법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인보호구와 의료장비 등의 의료·방역 물품 등을 상시적으로 비축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감염취약계층 등에도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바 있음.

* 의료·방역 물품 등: 보호복, 덧신, 마스크, 고글, 페이스센드, 장갑, 에크모, 인공호흡기, 산소공급기, 이동형음압기 등

「감염병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1. ~ 17. (생 략)

③·④ (생 략)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

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의료·방역 물품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방역 물품 지급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시 질병관리청장이 비축한 물품 등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며, 감염병 위기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및 배분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감염병 위기 시 비축물자의 우선 배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임.

나.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에 포함

- 현행법 제49조의2제1항은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① 저소득층, ②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③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현행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에서 이를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 수급권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및 기저질환자로 구체화하고 있음.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정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3.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③ (생 략)

□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도 감염취약계층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감염병 위기에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 장애인의 수는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2024년 말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263만 1,356명¹⁾임.

[감염취약계층 인원(「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35조의2제2항)]

(단위: 명)

구분		인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842,395 (‘26. 1월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활급여의 수급자	3,791 (‘25. 12월 기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308,246 (‘25. 12월 기준)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50,611 (‘26. 1월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347,047 (‘26. 1월 기준)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1,627,778 (‘25. 12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¹⁾	어린이 및 노인	-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
	장애인	-

주1: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경우 인원이 유동적이므로 자료 집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1) 자료: 국가통계포털

-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 및 노인의 보호 필요성²⁾에 대한 검토와 함께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할 경우에 대한 재정 부담 규모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형사고, 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장애인 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장애인·어린이 및 노인 인원]

(단위: 명)

구분	인원
장애인	2,631,356('24. 12월 기준)
어린이(만 12세 미만)	4,254,919('26. 02월 기준)
노인(만 65세 이상)	10,965,883('26. 02월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 및 주민등록인구통계

2)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 확진자 중 장애인 및 고령층에 대한 중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2. ~ 4의2. (생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 13. (생략)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④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 감염취약계층을 확대하여 감염에 취약한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 ☐ 다만,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현행 방식이 적절해 보임.

2) 질병관리청 (일부수용)

- ☐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방역 물품 지급 주체에 질병관리청장 포함(수용)
 - 감염병 위기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및 배분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감염병 위기 시 비축물자의 우선 배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 ☐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에 포함(신중검토)
 - 감염병 위기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 등을 주관하는 부처(복지부) 및 지자체의 의견 고려가 필요함.

3) 기획예산처 (수용곤란)

- ☐ 현재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및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방역물품 등 지원은 감염병 전파의 심각성 및 대응상황, 의학적 관점에서의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부처 및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찬성)

-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감염병 대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감염병 대응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매우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판단됨.
- 감염병 재난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며, 특히 장애인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해당함.
- 이러한 취약성은 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특성이므로 감염취약계층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현행 기준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찬성)

-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대응의 형평성을 높이는 입법으로 그 취지와 내용에 찬성함.
-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는 것은 장애특성으로 인한 감염병에 취약한 현실을 반영하고 이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됨.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의 주체로 포함됨에 따라

의료·방역 물품 지원 등의 보호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수정수용)

- 감염병 유행 시 시설 밖 장애인에 대한 보호 확대라는 개정안의 방향에는 동의하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저소득층 지원과의 중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을 통한 시설 밖(가정내) 장애인 중 보호가 시급한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 부담에 따라 ‘전체 장애인’에 대한 일괄 지원은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떨어지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496

【참고】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 지급 내역
-------------	------------------------------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물품	지급인원	소요예산 (백만원)
2020년 (1차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518개소, 3,877명	56
	정신요양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59개소, 1,132명	11
	어린이집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37,400개소, 169,473명	3,281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4,217개소, 12,066명	321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837개소, 2,313명	63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180개소, 450명	13
	경로당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66,864개소, 80,236명	4,306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9,884개소, 40,189명	835
	양로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94개소, 510명	9
	지역자활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250개소, 2,815명	34
	드림스타트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229개소, 1,926명	26
	노숙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148개소, 1,139명	16
	합 계			8,971
2020년 (2차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518개소, 7,755명	145
	정신요양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59개소, 2,264명	37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4,217개소, 24,132명	598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837개소, 4,626명	116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180개소, 900명	24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9,884개소, 80,378명	1,760
	양로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94개소, 1,020명	20
	지역자활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250개소, 5,630명	98
	노숙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손소독제	148개소, 2,278명	42
	합 계			2,840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물품	지급인원	소요예산 (백만원)
2020년 (3차 지원)	어린이집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소독용품, 체온계	38,000개소, 1,420,000명	6,033
2021년	저소득층	마스크	440만장	1,408

※ 2020년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비용 보조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지자체를 통해 배포

자료: 보건복지부